

〈제 536호〉

-주간- 광주 경영계

KEF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MPLOYERS FEDERATION

광주은행

◆ 등록금 납부 이벤트 당첨자 장학금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3일 '2019년 1학기 등록금 납부'와 '체크카드 경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등록금 납부 이벤트의 1등과 2등 당첨고객 2명을 본점에 초청하여 장학금 증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1학기 등록금 납부' 이벤트는 지난 17일 이벤트

당첨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주인공 총 102명을 선정했다.

이에 장학금 증정식을 통해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2등 당첨자 1명에게는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외에 행운상 100명에게는 1만원상당 스타벅스 모바일쿠폰을 전달했다. 당첨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 노사합동 '장애인 희망나눔 바자회' 후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지난 25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장애인 희망나눔 바자회'를 후원했다. 장애인 희망나눔 바자회는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밀알봉사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실로암사람들이 함께 실시한 행사로 판매수익은 전액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II. 광주 경증 소식

〈청렴사회협의회 청렴사회 협약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23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주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관협의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약속인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경제, 학계, 언론, 직능단체 대표 등 총 22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광주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실천과제로 ▲부패방지체계 구축 ▲청렴도 제고 등 윤리 강화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청렴실천 협약 지원 등의 과제를 선정하고, 민간부문은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 실천 ▲청렴교육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 ▲청렴문화 확산 등의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차 운영위원회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26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윤영현 상임부회장 등 운영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운영위원회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요와 현재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교육 및 취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2019년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국 일지 (4.22 ~ 4.26)

4.23 (화)	● 청렴사회협의회 협약식 참석 ● 지역산업 위기 대책회의 참석	4.25 (목)	●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일자리 박람회 참석
4.24 (수)	● 인자위 본회의 참석	4.26 (금)	● 제1439회 금요조찬포럼 ● 지산맞 1차 운영위원회 개최

II. 광주경총 소식

<1439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4월26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김형오 前국회의장(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을 초청 <백범 김구와 애국자들>이란 주제로 제1439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백범 김구만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며 치열하고 극적으로 살다간 인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며 힘겨운 망명 생활을 견디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다 홍탄에 맞아 생을 맞이한 민족의 지도자이자 영원한 투사다. 《백범일지》는 이토록 힘겹게 살아낸 투쟁의 삶을 회고하는 김구 개인의 자서전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기록이요, 역경과 질곡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증언이다. 한편으로는 나라에 혼신하느라 떨어져 지냈던 가족에 남기는 유서를 대신해 쓴 글이자 민족에 바치는 당부의 말이기도 하다.

백범 김구는 누구보다 비범하게, 인간적으로 살아낸 삶, 임시정부를 이끈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지만 실제 그의 삶은 그 외에도 수많은 변곡점을 거쳤다.

별호를 '보통 사람'이라는 뜻의 '백범'으로 고친 뜻대로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을 하고자 한 것이다. 김구는 감투에 욕심이 없었고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삶을 원했으나 격동의 시대, 폭풍 같은 환경이 그를 비범한 인간, 역경에 맞서 싸우는 전사로 키워냈다.

늘 깨어 있는, 살아 숨 쉬는 얼과 혼인 김구의 말과 행동, 삶과 사상은 우리에게 훌륭한 안내자이자 길잡이가 될 것이다.



III. 노사 및 판례동향

1. 노사 동향

■ 고용부는 4. 22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의 책임강화,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해제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

[참고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대표이사·가맹본부· 발주자 책임강화	▲ 산재예방 의무 부과 - 대표이사(제조업 500인 이상, 건설업 시공능력 1,000위) - 가맹본부(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 - 발주자(건설공사 50억 이상)
특수형태종사자 보호조치	▲ 특수형태종사자 범위를 9개 직종으로 한정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도급인 책임강화· 위험작업 도급제한	▲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 장소를 22개소로 한정 -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사내도급승인 대상 한정 - 능도 1% 이상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설비의 개조·철거 등 작업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해제 절차	▲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경총은 4. 22 경영계 코멘트를 통해 '작업 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경총은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의 자연문제가 지속될 것을 우려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또한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한편 민주노총은 4. 22 청와대 앞에서 하위법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도급승인 대상 확대, 작업 중지 해제 규정 폐기, 특수형태종사자 적용 직종 확대'를 주장

- 도급승인 대상에 발전소 하청, 철도 설비 하청, 조선하청 업무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4일 이내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강제규정 폐기와 작업 중지 해제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을 요구

■ 민주노총은 산업안전 관련 투쟁 강화

-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4. 24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개최

※ 4공동캠페인단 참여 조직 : 양 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

- 공동캠페인단은 기업들의 산재예방 의무 소홀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에게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폐기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담긴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
- 민주노총은 4. 28 기자회견을 개최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 예정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 내용 :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기업 또는 정부의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경영 책임자 또는 담당 공무원 처벌

■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폐기,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대(對) 국회 투쟁 강화 예고

-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개최일에 '노동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III. 노사 및 판례동향

경고파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 국회가 4 ~ 5월 '경총의 요구사항인 교섭권, 파업권 개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전개할 예정

-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은 대(對)국회 릴레이 농성 진행 계획

- ※ 4.22. 보건, 민주일반 / 4.23. 공공, 여성 / 4.24. 건설, 화섬, 비정규 / 4.25. 금속, 언론, 정보 / 4.26. 사무금융, 서비스 / 4.29. 공무원, 전교조

-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전면화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등을 주요 슬로건으로 5. 1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 예정

■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요구안 및 투쟁계획 확정

- 보건의료노조는 4. 16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인권존중·안전한 병원 만들기, 임금 인상 6%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별교섭 요구안 확정

- ※ 요구안 주요 내용 :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장시간 근로 근절 등), 인권존중·안전한 병원 만들기(불법적 의료행위 근절 등), 임금인상 6%,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료민영화 중단 등

- 또한 노조는 산별교섭 강화, 보건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목표로 정책협의, 산별교섭, 산별투쟁을 병행한다는 계획

- ※ 주요 일정 : 5. 8.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4 ~ 5월 대정부 정책협의/ 6. 13 총력 투쟁 선포대회

■ 한국GM에서 2019년 1월 분리된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사는 한국GM 단체협약 승계를 두고 갈등

- 노사는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노조는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4. 15 조정중지 결정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회사는 기존 한국GM 단체협약은 생산직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무직 중심 신설법인에는 그대로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
- 한편 노조는 기존 한국GM 단체협약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조활동, 징계요건 등 조항은 반드시 승계되어야 한다는 입장

○ 노조는 4. 22 ~ 23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2.6% 찬성으로 쟁의권 확보

※ 찬반투표 결과 : 조합원 2,067명 중 1,707명 찬성(86.6%)

■ 콜텍 노사는 4. 22 정리해고 근로자 일부에 대해 원직 복직하기로 합의

○ 노사는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임재춘·김경봉 조합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고 복직자들은 5. 2 복직 후 5. 30 퇴직 예정

- 현장투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복직 활동을 같이 해온 금속노조 콜텍지회 소속 근로자 22명도 해고 기간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하기로 합의

※ 합의안 주요 내용 : ▲2007년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유감 표명, ▲이인근, 임재춘, 김경봉 조합원 복직(5. 2 복직 후, 5. 30 퇴사), ▲국내 공장 재가동 시 희망자 우선 채용, ▲콜텍지회 조합원 25명 합의금 지급, ▲민형사상 소 취하

○ 한편 금속노조는 콜텍노조와 함께 투쟁을 벌였던 콜트노조에게도 금번 협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나 '공장 재가동 이외에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하며 불참

III. 노사 및 판례동향

2. 판례 동향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 아래 실제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임(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들임.
- 200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2010. 7. 1.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자, 정액사납금제¹⁾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오던 이 사건 회사는 2010. 7. 29. 및 같은 해 10. 27. 소속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함.
 - 1) 정액사납금제 : 택시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자신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즉 초과운송수입금은 본인에게 귀속하는 방식

※ 200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산입범위 임금에서 제외됨.

-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에서 115시간까지 2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단축함.
-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규정 내의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이는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에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고정급 금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III. 노사 및 판례동향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를 장기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음.

- 이에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예측 가능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도입된 것임.
- 이 사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 임금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님.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심히 부당함.
- 이 사건 회사가 2회에 걸쳐 변경한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3. 시사점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취업규칙 불이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더라도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경우까지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임.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목적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더라고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끝.